

IV 종교법인 과세실태(부제/한국)

I. 총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복지와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여야 할 대국민 서비스를 종교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정책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통하여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세제상의 혜택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조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지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였으며, 최근 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동안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여 되고 있다. 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국가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과세되어야 함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과세되지 못하였다. 사실 현행법에는 종교인 비과세 조항이 없다. 우리나라 법은 비과세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주의이지만 소득세법 12조(비과세소득)와 19조(세액의 감면)에 종교인 면제 조항은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세법 시행령만으로 과세가 가능했다. 정부의 의지와 종교계 협조만 있으면 종교인 과세는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40년 넘게 논란만 이어진 이유는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종교활동을 ‘근로’로 보는 시각에 종교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소득 분류 문제는 일부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 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종교 활동이 봉사활동인지 여부에 논란이 남아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과세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II.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재 상황

1. 개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종교시설은 9만개, 성직자는 36만5천명, 현금규모는 연 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성직자 중 천주교회와 개신교 중 대형교회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가 현실화 되더라도 늘어날 세수는 많아야 고작 1~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지난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난 해 연말 국회는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되 과세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은 종교계 의견을 들어 올 2월에 결정한다”는 부대의견만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법개정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종교계와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 원안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안대로라면 정부 추산으로 대상자는 약 1만 5000명, 세수는 100억~200억 원 정도가 된다. 이 정부의 원안도 일반인에 견줘 종교인의 세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는 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회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단체의 민사 관계에 민법이, 형사 관계에 형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 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번 판결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론이 더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2.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

(1)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소득원천에 따른 과세 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다. 영리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한 원천, 즉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만으로 한정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현재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법의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에·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의 범위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만,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비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3)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한다.

- ① 사업소득: 여기서 ‘사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자소득
- ③ 배당소득
- ④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⑤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의 부수수익이 있는 때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본다.
- 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 ⑦ 채권매매익: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채권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사업 또는 부실 채권 인수·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매매익은 제외한다.

※ 법인 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가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의 범위
영리내국법인	전 세계의 모든 소득	납세의무 있음	무제한 납세의무자
비영리내국법인	전 세계의 수익사업소득	납세의무 없음	제한 납세의무자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 모든 소득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4) 일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나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에 있어서 영리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규정은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손금산입의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그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본래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결산서에 계상하게 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잉여금처분에 따른 신고조정을 허용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② 손금산입범위액 = 이자·배당 소득금액 +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자·배당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50% (또는 특례비율)

여기서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한정하며, ‘이자·배당배당소득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
- b. 배당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③ 상계: 이처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④ 환입: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a. 해산한 경우(고유목적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 b.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 c.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 d.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으로 한정한다)
- e.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계상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임의 조기환입)

㉔ 이자상당액의 징수: 위 d,e 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text{이자상당액} = \text{법인세액의 차액} \times \text{기간} \times 0.03\%$$

- a. 법인세액의 차액: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한다.
- b. 기간: 손금산입 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2)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서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다.

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㉕ 개요: 비영리내국법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a. 토지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b.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c.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A), 특정주식(B)
- d.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권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이처럼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㉖ 제도의 취지: 본래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같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법인과 같이 세무조정 등 제반 납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영세한 비영리법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a. 일반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b. 일반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와 사실상 동일한 특례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납세절차: 특례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일반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일반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도 하여야 하며(이 경우 분납 및 물납도 적용된다), 이러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례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특례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비영리내국법인은 이러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일반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일반법인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4) 그 밖의 특례

① 기장의무와 무기장 가산세의 배제: 비영리법인은 기장의무를 진다. 다만,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예외적으로 기장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편, 기장의무를 지는 비영리법인은 무기장가산세는 적용 받지 않는다.

②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의무의 면제: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여기서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 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3. 종교단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비영리사업과 관련된 무상취득이라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 전원이 혜택을 누린다고 보는 종교단체 및 기타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결국 부의 사회환원이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별도의 재정부담없이 공익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예외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4. 종교단체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

(1) 양도소득세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자(개인)로 간주될 경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있는 법인 이외의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개인)으로 간주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구분이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그리고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특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당연히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로부터 근로 등의 제공대가로 급여 등을 수령하는 성직자 등은 당연히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된다.

5. 종교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1)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둘째,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에 위한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혹은 실비 또는 무상대가로서의 공급이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한다.

3)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4)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2) 종교단체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적용 여부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비록 종교단체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3) 공익사업 관련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재화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3)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지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세제혜택 주요 내용

구 분	관련법령	주요내용(수혜대상)
재산압류금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법인세 감면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비영리법인의 자산의 고유목적사용시,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법인이 종교목적 및 지정기부금에 사용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산입
기부금의 손비처리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타법인이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는 일정한도의 기부금은 손비처리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특례 및 납부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신고 및 원천징수신고로 과세표준신고 인정 특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 또는 예배용품은 개별소비세 면제

주세 면제	「주세법」 제31조	사원, 교회 등 종교단체의 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주류는 주세 면제
관세 감면	「관세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 40조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은 관세 감면
상속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면제
지방세 면제	「지방세특별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등 지방세 면제

Ⅲ. 세법개정에 대한 진행과정

1. 개요

그 동안 종교인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관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뒤 45년 넘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난 해 연말 국회는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되 과세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은 종교계 의견을 들어 올 2월에 결정한다”는 부대의견만 처리하였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법개정은 되지 못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십 수년 전부터 제기된 해묵은 문제다. 그 동안 암묵적인 비과세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2000년대 초반 천주교 신부, 수녀를 중심으로 자발적 납세운동이 전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다.

이는 곧바로 기독교, 불교계 전반에도 납세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도화선이 됐다. 특히 지난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박재완 장관은 공식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논의가 재차 부각되기도 했다.

현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정권 초기 시절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결국 부임 첫 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종교인 과세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세금에 예외는 없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2012년까지 종교인 과세 진행 내용

○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목사, 신부 등 성직자 갑종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거론 하였으나 종교계 반대로 무산

○ 1992년

한명수 수원 창훈대교회 담임목사와 손봉호 서울대 교수 간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벌였으나 국세청은 강제징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소득세 납부를 결의하여 국내 16개 천주교 교구 중 영세 교구 및 군종교구 등 4곳을 제외한 12곳에서 소득세 납부하게 되었다.

○ 2006년

종교비관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면세’를 이유로 국세청장을 검찰 고발하였으나 그 결과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한다고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과세원칙은 확정됐지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 며 유보하였다.

3. 2013년 세법개정안

(1)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 기타소득으로 과세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80%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경비로 인정한다.

② 과세방법

종교단체는 반기 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한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③ 과세시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한 이유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 과세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부터 개정법령을 적용한다.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2014년 세법개정안

(1) 종전 개정안과의 비교

①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

- 종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 대안: 「소득세법」에 기타 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신설

②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 종전: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법 개정안)
- 대안: 현행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

③ 종교인 소득의 과세방법

- 종전: 필요경비 80%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 대안: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되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편화

④ 종교인 소득의 정의

- 종전: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종교예식 또는 의식)을 집행·관장하고 받는 금품”(소득세법 시행령)
- 대안: 종교계의 우려가 없도록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법률(「소득세법」)에 규정

⑤ 근로장려금

- 종전: 근로장려금지원 없음
- 대안: 근로장려금을 지원

(2) 2014년 수정안의 과세 방향과 현재 결정 사항

원칙적으로 과세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과세시기·과세방법 등 세부 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금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5. 현재 기획재정부의 입장

종교인 납세 의무화를 추진했던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에 미온적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였고, 금년 2월 종교계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수정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었다.

IV. 근로소득과 형평성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교직자 수는 38만 명. 이 중 종교인 과세 대상은 약 8만 명으로 예측된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종교활동을 ‘근로’로 보는 시각에 종교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종교 활동이 봉사활동인지 여부에 논란이 남아있다. 소득분류 문제는 일부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 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필요경비 80%를 공제해주어 근로 소득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세부담 차가 크다.

본래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한 소득이다. 종교인의 소득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비종교계로부터 기타소득 과세가 세법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종교인 소득은 매월 급여 형태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 강연료, 인세 등의 비정기적인 소득이 더해지고 종교단체 사정에 따라 차량유지비, 본인 및 자녀교육비, 체력단련비, 도서구입비 등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종교인 중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이 사례금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사례란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인사’로 되어 있고, 사례금이란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정의 내린 세법상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사례금이란 사전약정 없이 제공된 역무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서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소득 여부 논란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분류를 만드는 방안도 제기된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특수성이 있는 다른 직업군 소득을 세세하게 분류해 만들어야 하는 점과 그로 인해 다른 근로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분류 신설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V.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

1. 찬성의 입장

대다수 국민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86%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고 12%만 반대했다. 종교계도 대체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고 일부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일부 개신교회와 사찰 등도 자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국내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이다.

정부의 입장 또한 세수 확대보다는 사회 전체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종교인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국가의 기본을 지켜야 하는 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과세되어야 한다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① 기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일지라도 목회자 보수는 소득에 해당된다.
- ② 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다.
- ③ 종교인 면세는 조세평등원칙과 국민정서에 위배된다.
- ④ 다른 선진국은 종교단체에서도 과세를 한다.

2. 반대의 입장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과세를 시작으로 종교계를 향한 본격적인 세부담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종교기관이 보유한 각종 시설·자산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종교 시설은 대략 9만여 개이고 공식 현금 규모는 연 6조원이다. 현재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 중 종교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취·등록세 등도 비과세다. 종교기관은 세법상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과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 일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세무당국은 “종교세로 발생하는 세수는 1,000억 원 미만으로 예측 돼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 ① 목회자는 성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 ② 세법상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
- ③ 교회 현금은 기부금이며, 성직자 사례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이다.
- ④ 종교 억압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 ⑤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이 많다.
- ⑥ 종교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VI. 다른 국가의 종교인 과세방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종교라는 특수성에 맞춰 약간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1. 미국

미국은 종교인 과세를 소득세보다는 일종의 퇴직연금 납부에 가깝게 시행한다. 미국 연방세법은 종교인에게 소득세가 아닌 사회보장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은퇴 후 노후생계 수단이 없을 수가 있어 일종의 연금형식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은퇴 후 연금을 받지 않으면 면세 신청을 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사례비 등은 반드시 세정당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독일

독일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지만 납세 대상은 성직자가 아니라 신도이다. 가톨릭·개신교·유대교 등을 믿는 교인들이 연 소득세의 8~9% 를 종교세로 납부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종교인 과세로 인한 납부금액은 해당 성직자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이 때 임금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정부가 직접 임금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고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성직자도 일반 개인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 받는다. 종교단체에서 받는 보수나 기타 사례비 등이 성직자의 주 수입원이다. 성직자는 개인소득자 처럼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없어도 정부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4. 일본

일본에서 종교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급여나 퇴직금, 보수·요금 등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원천징수대상인 급여에는 금전 외에도 경제적 이익의 공여나 물품 지급도 포함된다.

VII. 종교인과세의 이론적 근거

1. 법적근거

현행법에는 종교인 비과세 조항이 없다.

(1)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 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주의이지만 소득세법 12조(비과세소득)와 19조(세액의 감면)에 종교인 면제조항은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세법 시행령만으로 과세가 가능했다. 정부의 의지와 종교계 협조만 있으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40년 넘게 논란만 이어진 이유는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 소득세법 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②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a.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b.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d.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e.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f.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b.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c.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d.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e.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f.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g.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보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h.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j.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k.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 l.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m.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n.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o.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p.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q.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s.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t.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u.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④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a.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b. 삭제 <2013.1.1.>

c.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d.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e. 삭제 <2013.1.1.>

⑤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b.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c.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d.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e.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f.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g.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59조 5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a.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b.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2. 세수의 감소방지

종교인 등에 대한 조세혜택은 국가의 전체 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종교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은 결국 개인이나 영리법인의 조세부담금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종교인 등의 비과세 내지 면세의 태도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VIII. 결론

‘종교인 과세’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종교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 종교계 일부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과세 방식 등의 이유로 과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종교단체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공익사업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 역시 「헌법」에 규정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종교인 등의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어떤 단일집단보다 강력하다.

우 리 역사에 있어서도 종교는 국민적 통합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정부가 그 동안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종교인 등에 대한 특권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종교인 등의 활동을 세제상 확대 지원해야 한다. 한편 성직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횃불의 역할을 해온 종교가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부정적이고 부패한 이미지를 보여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정안은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범주를 새로이 만들고,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개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좁게 해석하였다. 이 경우 종교인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현저히 적어진다. 직업의 성격에 따라 과세범주를 만든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인만 따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면 세법상 개념체계가 무너지는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강제성을 띤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은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이며, 앞으로 형평성이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